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응시 결격사유

○ 인천교통공사 인사규정 제1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채용비위가 적발되어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
11.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 철도안전법 제11조

1. 19세 미만인 사람
2.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두 귀의 청력 또는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

붙임 2)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기준(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 (제12조제2항 및 제40조제4항 관련)

2.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검사항목	불합격 기준(최초검사)
가. 일반 결함	1) 신체 각 장기 및 각 부위의 악성종양 2) 중증인 고혈압증(수축기 혈압 180mmHg 이상이고, 확장기 혈압 110mmHg 이상인 경우) 3)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감염병 중 직접 접촉, 호흡기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
나. 코·구강·인후 계통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장애나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코·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다. 피부 질환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만성 피부질환자 및 한센병 환자
라. 흉부 질환	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2) 활동성 폐결핵, 비결핵성 폐질환,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3)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마. 순환기 계통	1) 심부전증 2)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분당 150회 이상)이나 기질성 부정맥 3) 심한 방실전도장애 4) 심한 동맥류 5) 유착성 심낭염 6) 폐성심 7)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바. 소화기 계통	1)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종대 2) 간경변증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활동성 간염 3) 거대결장, 계실염, 회장염, 궤양성 대장염으로 난치인 경우

검사항목	불합격 기준(최초검사)
사. 생식이나 비뇨기 계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성 신장염 2) 중증 요실금 3) 만성 신우염 4) 고도의 수신증이나 농신증 5) 활동성 신결핵이나 생식기 결핵 6) 고도의 요도협착 7)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및 요관결석 8)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아. 내분비 계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증의 갑상샘 기능 이상 2) 거인증이나 말단비대증 3) 애디슨병 4) 그 밖에 쿠싱증후군 등 뇌하수체의 이상에서 오는 질환 5) 중증인 당뇨병(식전 혈당 140 이상) 및 중증의 대사질환(통풍 등)
자. 혈액이나 조혈 계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혈우병 2)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3) 중증의 재생불능성 빈혈 4)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5) 진성적혈구 과다증 6) 백혈병
차. 신경 계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리·머리·척추 등 그 밖에 이상으로 앓아 있거나 걷지 못하는 경우 2)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에 따른 후유증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초신경질환 4) 머리뼈 이상, 뇌 이상이나 뇌 순환장애로 인한 후유증(신경이나 신체증상)이 남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뇌 및 척추종양, 뇌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6)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7)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8)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 실조증, 다발성 경화증)

검사항목	불합격 기준(최초검사)
카. 사지	1) 손의 필기능력과 두 손의 악력이 없는 경우 2) 난치의 뼈·관절 질환이나 기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경우(운전업무에만 해당한다)
타. 귀	귀의 청력이 500Hz, 1000Hz, 2000Hz에서 측정하여 측정치의 산술 평균이 두 귀 모두 40dB 이상인 경우
파. 눈	1) 두 눈의 나안 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5 이하인 경우(다만, 한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3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경우(다만,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야의 협착이 1/3 이상인 경우 3)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4)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5) 색각이상(색약 및 색맹)
하. 정신 계통	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지적장애 2)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3)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 4)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알코올 관련 장애 등 5) 뇌전증 6) 수면장애(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수면발작, 몽유병, 수면 이상증 등)이나 공황장애

붙임 3) 필기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필기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채용분야	가산대상 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채용분야전부 (공 통)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철도교통관제사(도시철도 포함)				
컴퓨터활용능력 1급(사무, 역무안전 응시자),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전기, 신호, 토목, 차량(기계, 전기) 응시자)					
사 무	교통		교통	교통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관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전자계산기제어	
			정보보안	정보보안	
전기전자 (전기, 신호, 통신, 전자)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산업계측제어		반도체설계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기기
	전자응용		전자 임베디드	전자	
					전자카드
			메카트로닉스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방송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	통신기기 통신선로
		통신설비			

채용분야	가산대상 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기전자 (전기, 신호, 통신, 전자)			산업안전	산업안전	
	전기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시설환경 (토목, 기계설비 (기계, 전기))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	건축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품질시험				
				방수	방수
			실내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전산응용건축제도
			토목	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철도				
			철도토목	철도토목	철도토목
			철도보선	철도보선	보선
					측량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도시계획		도시계획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기계	기계가공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기계가공조립	
		일반기계			

채용분야	가산대상 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시설환경 (토목, 기계설비 (기계, 전기))			기계설계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정밀측정
					연삭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설비보전
	산업기계설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생산자동화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특수용접
		배관		배관	배관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기계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소방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대기관리				
			대기환경	대기환경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수질관리				
			수질환경	수질환경	
	토양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환경
			온실가스관리	온실가스관리	

채용분야	가산대상 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차량(기계), 차량(전기), 차량2	기계	기계가공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기계가공조립	기계가공조립
			일반기계 기계설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연삭 공유압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전자부품장착	기계정비 전자부품장착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생산자동화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특수용접
		배관 전기		배관 전기	배관 전기
	전기응용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전기철도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기기			전자기기
			전자 임베디드	전자	
	전자응용				
					전자캐드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무선설비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통신설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채용분야	가산대상 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차량(기계), 차량(전기), 차량2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차량				
		판금제관		판금제관	판금제관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기계안전				
	전기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승 무	기계	기계가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컴퓨터응용선반 기계가공조립
			일반기계		
			기계설계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건축전기설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전기철도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반도체설계	반도체설계	
	산업계측제어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기기			전자기기
		전자	전자		
전자응용					
				전자카드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관리					
				정보기기응용	

채용분야	가산대상 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승 무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무선설비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통신선로
		통신설비			
	기계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안전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 (통폐합 포함)은 인정, 단 가산 자격증에 해당해야 함.

붙임 4)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 편의지원 항목

장애유형 및 등급		편의지원 항목	
지체 장애	상지	공 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장애정도가 심한 자	공통편의지원, 답안지 대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공통 편의지원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뇌병변 장애	공 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장애정도가 심한 자		공통 편의지원, 답안지 대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공통 편의지원
시각 장애	공 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정도가 심한 자		공통 편의지원,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공통 편의지원
청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기타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해당증후가 있을 경우 시험 중 화장실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방광증후군, 신장, 심장, 장루, 요루 장애 등		해당증후가 있을 경우 시험 중 화장실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기타	임산부		시험 중 화장실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편의지원 대상 및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 기타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산부 등 편의 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p>기간 및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지원 신청 :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 관련서류 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본인의 해당 여부, 지원요건, 구비서류, 편의지원 항목을 확인 후 입사지원서 및 편의지원 신청화면에서 편의지원 내용 기재(채용홈페이지 신청) -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인 증명서 등)는 스캔하여 입사 지원서 작성시 첨부파일로 제출(등록)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 의사진단(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임산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 의사진단(소견)서에는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 임산부의 경우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예시) 상기인은 임신 ()주, 필기시험 예정일(0000.00.00) 전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산모로서,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에 한함 · 확대문제지 등 : 확대문제지(118%, 150%), 축소문제지(82%), 확대답안지 (118%, 150%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답안표기) · 편의지원 신청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여부 결정은 채용홈페이지에 게재 될 예정이며, 반드시 자신의 편의지원 신청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지원 신청서 서식

시험 분야		시험구분	<input type="checkbox"/> 필기시험 <input type="checkbox"/> 인성검사 <input type="checkbox"/> 면접시험
성 명		응시번호	
출생월일		전화번호 (보호자는 필요시 기재)	응시자 : 보호자 :
주 소	□□□□□		
구 분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input type="checkbox"/> 임신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시적 장애 등 <상제기술>		
첨부서류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카드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상이부위 및 등급 확인 서류 <input type="checkbox"/> 의사 진단(소견)서		
편의 제공 요청 사항	문 제 지 (택1)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확대문제지 (□ 118% □ 150%) <input type="checkbox"/> 축소문제지 (□ 82%)	
	답 안 지 (택1)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대필 <input type="checkbox"/> 확대답안지 (□ 118% □ 150%) <input type="checkbox"/> 아라비아 숫자 표기	
	시 험 실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별도 시험실	
	장애인 보조기구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보조기구 명칭() <input type="checkbox"/> 보조기구 사용 시 필요사항 (□ 해당 없음 □ 필요사항 :)	
	기 타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허용 <input type="checkbox"/> 응시요령 등 관련자료 서면 제공 <input type="checkbox"/> 인성검사 시 필요사항 () <input type="checkbox"/>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공지	
※ 신청서 기재 시 편의제공 내용과 범위를 확인 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교통공사 채용시험에서 위와 같이 편의제공 대상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성명(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5)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붙임 6) 자기소개서 평가 기준 및 블라인드 채용 준수를 위한 가이드 라인

- ❖ 인천교통공사는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본인임을 인지할 수 있는 학력, 학교명, 출신지역, 부모직업, 가족관계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 ❖ 자기소개서는 AI평가를 시행하며, 그 결과를 적부심사가 아닌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 ❖ 지원자께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위원에게 평가결과 제공)

○ 자기소개서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오기재 - 질문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지원서 작성 - 자기소개서 글자 수를 채우기 위해 의미없는 문자·숫자·기호 등을 반복하여 기재 - 자기소개서 2개 문항 이상 동일 내용으로 작성 - 표절검사 결과 전체 표절률 30% 이상 또는 항목별 표절률 50% 이상인 경우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출신학교 / 성별 / 가족 및 친인척 재직정보 등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1건 이상 등

○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사항

구분	미준수 사항
성명	- 입사지원서의 성명 기재란을 제외하고 자기소개서 항목에 성명(성 또는 이름만 기재 포함)을 기재
학력	- 지원자의 출신 학교명을 기재 또는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기재
성별	- 특정 성별이 드러나는 단어 및 문장으로 지원자의 성별을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기재
연령	- 지원자의 생년월일 및 연령대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직접적인 연령을 기재
출신지역	- 지원자의 고향 및 거주지 등 출신지역을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기재
가족 및 친인척 관계	- 가족 또는 친인척의 특정회사 재직정도(과거 근무 정보 포함)를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기재

○ 직무경력 관련 처리 및 기타 유의사항

- 직무경력 : 경험·경력 기술 시 ○○공사, ○○전자, ○○연구원과 같이 입력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이메일 주소 입력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